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법인고객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하나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계좌조회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 기관을 말합니다.
 -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기관과 별도 제휴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 "잔액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거래내역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은행이 승인한 숫자의 조합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써 PIN을 포함합니다.
 -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식별, 거래 승인을 위하여 직접 설정하고 입력하는 숫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 "수수료"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합니다.
-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개별 거래 약관 및 약정, 금융결제원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및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이용자"사이의 "서비스"이용계약 (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가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제한됩니다.
 1.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없거나 은행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 ③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 하는 경우
 2.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전자우편 등의 방
준법감시인심의회 제2024-약관-125호(2024.11.18)

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 또는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일반 사항을 "이용자"의 연락처로 통지 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이용자" 본인이 아닌 경우, 그 수신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정당하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를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중대한 내용은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은행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잔액조회 :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

② 거래내역 조회 :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거래점명, 통장인자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

③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①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은행은 "이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용계좌)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의한 계좌 중 계좌 개설기관을 통해 별도로 금융정보 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완료한 계좌에 한합니다.

제12조 (인증)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OTP 발생기 인증 등(이하 "인증수단"이라 합니다)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1. "이용자"는 "인증수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업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의 서비스 및 거래 제한 사유를 준용합니다.

1. "운영기관", "참가기관", "은행"의 시스템 점검시간
2.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수수료)

① 은행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 내용 및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 변경 시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15조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계좌 정보, 인증수단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5.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은행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10.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기며,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를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비밀번호, PIN번호 등의 누설
3.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7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제공한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분쟁사항 중 "운영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직접 대응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과 "운영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2024.12. 16)

본 약관은 2024. 12. 16일부터 시행합니다.